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(보사행정분야)

□ 심사경과

1. 심사일정

가. 제 안 자 : 부 천 시 장

나. 회부일자 : 96. 4. 24

다. 상정일자 : 제45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(96. 4. 26) 상정

라. 의결일자 : 제46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(96. 6. 20)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가정복지과장 이정숙)

가. 내용

○ 모자복지법시행규칙 개정으로 모자가정증명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관한 사무를 동에 위임하고자 함

○ 모자가정증명서 발급권한을 동장에 위임

－현행 : 시장이 발행

-개정 : 동장이 발행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시에서 발급하는 것보다 동에서 발급하면 문제점은 없는지?	○ 민원인이 시까지 왕래하면 불편이 많지만 동에서 발급 받으면 시간 절약 및 편리하다고 봄.

4. 토론요지 : 시민편익도모를 위한 조례로 개정함이 타당

5. 수정안 내용 : 해당사항 없음

□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106호
의 결 년 월 일	96. 6. 28 (제46회)

제출년월일 : 1996. 4. 24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○ 모자복지법시행규칙 개정(1996. 1. 17 보건복지부령 제18호)으로 모자가정증명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관한 사무를 동에 위임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○ 모자가정증명서 발급권한을 동장에게 위임(안 제2조)

- 현행 : 시장이 발행
- 개정 : 동장이 발행

□ 기타 참고사항

○ 모자복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(96. 1. 17 보건복지부령 제18호)

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별표중 2. 동 위임사항의 보사행정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구 분	위임사무명	단위사업명	근거법규
보사행정	4. 모자가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	모자가정증명서의 발급	모자복지법시행규칙 제9조의2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			개 정 안			
2. 동 위임사항				2. 동 위임사항			
구 분	위임사무명	단위사무명	근거법규	구 분	위임사무명	단위사무명	근거법규
보사행정	1~3 (생략)			보사행정	1~3 (현행과 같음)		
	신설	신설	신설		4. 모자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	모자가정증명서의 발급	모자복지법시행규칙 제9조의2